
2020년도 제2차 이사회

2020. 7. 24 (금)

이사회 안건

의결안건

- (제1호) 취업규정 개정(안)
- (제2호) SBC인증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 (제3호) 주주총회 소집(안)

보고번호	제 1 호
년 월 일	2020년 7월 24일

의
결
사
항

취업규정 개정(안)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7월 24일

1. 의결주문

- 취업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한 권고과제 수행 및 행동강령 위반자 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조정

3. 주요내용

- 취업규정 [별표8]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 징계양정과 동일하게 적용
- 부패행위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징계기준 : 정직→면직, 정직·감봉→정직

4.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취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행) [별표 8]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징계의 사유	비위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생략)	(생 략)			
3. 인증원의 명예손상 행위 가. 성폭력 나. 성희롱·성매매 다. 기타	<u>면직</u> <u>정직</u> <u>면직</u>	<u>면직.정직</u> <u>정직.감봉</u> <u>정직</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u>감봉.견책</u>	<u>감봉.견책</u> <u>견책</u> <u>견책</u>
4.~7.(생략)	(생 략)			
8.부패행위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u>정직</u>	<u>정직.감봉</u>	감봉.견책	견책
(신설) [별표8]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징계의 사유	비위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생략)	(생 략)			
3. 인증원의 명예손상 행위 가. 성폭력· 나. 성희롱·성매매 다. 기타	<u>면직</u>	<u>면직.정직</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4.~7.(생략)	(생 략)			
8.부패행위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u>면직</u>	<u>정직</u>	감봉.견책	견책

보고번호	제 2 호
년 월 일	2020년 7월 24일

의
결
사
항

SBC인증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7월 24일

1. 의결주문

- SBC인증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청탁금지법 개정('19.11.26.공포, '20.5.27.시행)에 맞춰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행동강령’ 의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토록 권고 받음

3. 주요내용

-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등 신고 규정 정비
 -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
 -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은 해당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시스템 명칭 정비 등
 - 제로미 시스템이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으로 통합·개편 됨에 따른 시스템 명칭 현행화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신규 설정

4.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SBC인증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내지 제25조(생략)</p> <p>제26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생략)</p> <p>②임직원은 <u>외부강의등</u>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u>미리</u>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생략)</p> <p>④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⑤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외부강의등</u>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 ~ ⑧(생략)</p>	<p>제1조 내지 제25조(생략)</p> <p>제26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생략)</p> <p>②임직원은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u>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u>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 (삭제)</p> <p>⑤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임직원의 외부강의등</u>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 ~ ⑧(생략)</p>
<p>제27조 내지 제40조(생략)</p> <p>(신설)</p>	<p>제27조 내지 제40조(생략)</p> <p>제41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p> <p>①대표이사는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대표이사는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u>공공기관 청렴시스템</u> (https://ep.clean.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신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고번호	제 3 호
년 월 일	2020년 7월 24일

의
결
사
항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7월 24일

1. 의결주문

- 2020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정관 제18조, 제24조 의거, 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최일자 : 2020년 7월 24일(금), 11:30~
- 개최장소 : SBC인증원 임원실
- 참석자 : 주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안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비상임)이사 변경 승인의 건